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26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김선교·김상훈·김석기

구자근 · 김성원 · 김위상

강선영 • 우재준 • 김예지

서천호 · 이헌승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안전등급을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D등급(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으로 지정된 경우 현행법 상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판단하여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 해석상의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법률 제 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을 "필요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이하로 지정된"으로, "표지"를 "표지(전자적 방식을 통한인식가능한 표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①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①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을 실시			
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등이 있거나 제16조에 따			
라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			
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			
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u>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u>		
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는 안전등급이하로 지정된		
알리는 <u>표지</u> 를 설치하고, 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표지(전자적 방식을 통한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인식 가능한 표지를 포함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